성주군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정이유

○ 우리군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(안 제1조, 안 제2조)
나.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4조～제14조)
다. 성주군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～제19조)
라.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20조～제21조)
마.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23조～제2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관광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(2022. 1. 28. ～ 2022. 2. 17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 성주군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
○ 성주군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,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, 관광 기념품 판매점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,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·상품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